

회원자격 및 회비운영 규정(안)

제정 2024.8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(이하 "본회"라 칭한다)의 정관 제2장(회원)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의 자격) ① 본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2장 제6조 및 본 규정에 의거 <별표1, 별표2>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 기관과 개인을 말한다.

② 회원은 개인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하여, 회비의 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종신회비를 납부하는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① 회원은 정관 제2장 제7조,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②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권리를 가진다.

1. 학회 정기간행물, 학술지 및 출판물 제공
2. 연례 컨퍼런스 참가비 할인
3. 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석

③ 기관회원이 지정한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본협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회비 액수 규모, 가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.

제4조(회비의 종류) 회비는 개인회비, 기관회비로 구분하고, 행사 또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.

1. 개인회비 : 개인이 매년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 다만, 등기임원(회장, 부회장, 이사)은 일시불로 종신회비를 납부한다. 등기임원을 제외한 개인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.
2. 기관회비 :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협회 등 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제5조(회비부과) ① 회비부과 기준은 <별표3>과 같다.

② 개인회원이 등기임원이 되어 종신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, 기 납부한 회비와 종신회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
④ 위항에도 불구하고, 이사회 의결에 의해 다음 사항에 준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본 회의 명예 및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경우
2. 본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또는 범위를 정하여 감면하는 경우
3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회비의 수납) ① 회비는 현금(무통장입금, 계좌이체 포함), 신용카드 등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납한다.

② 연회비는 입회일자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여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협회는 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<별표4>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비의 관리) ①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총괄 관리한다.

② 회비는 본협회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사무국은 회비납부자 장부를 <별표5>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, 회장의 결재에 의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른다.

④ 수납한 회비에 대하여 결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한) 회비의 기한은 1년이며, 그 시점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9조(회비미납자에 대한 조치)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당해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 단, 미납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.

제10조(회원탈퇴)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표6> 및 <별표7>의 회원탈퇴

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미납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퇴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는다.

제11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이사회
회의 의결에 따른다. 단,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의
확인을 받아 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조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
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<별표1>

개인회원 가입 신청서

회원정보	성명	한글 영문	생년월일	
	연락처	사무실 핸드폰	E-mail	
	주소			
	직장명		직위	
첨부서류	1. 이력서(학력, 경력 포함) 1부 2. 사진파일(용량 50kb 이상 jpg 파일, 파일이 없는 경우 원본사진 1매) 3. 재직증명서 1부			
회비 납부방법	연회비(가입비 없음)			
	☐ 20,000(회원기관 소속)		☐ 50,000(그 외 개인)	
	납부계좌 : 국민은행 461301-04-661447 (예금주 :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)			
개인정보 제공 동의	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회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행, 행사/교육 신청 확인, 계산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(수집·이용)합니다. 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, 상호(법인명), 직위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E-mail (등)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입회원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추후 이력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계속 보유합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활용불가토록 폐기처리 됩니다. 4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협회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(이름, 회사, 이메일 등)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5. 개인정보제공동의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공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☐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.			

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동의하고,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자 성명 (인)

(사)한국연구행정협회장 귀하

〈별표2〉

기관회원 가입 신청서

회원정보	기관명	한글 영문		
	사업자등록 번호			
	설립일			
	주 소			
	대표자			
	홈페이지		분류	산, 학, 연, 관, 기타
담당정보	담당자		부서명	
	직 위		E-mail	
	전 화			
회비 납부방법	연회비 선택(가입비 없음)			
	☐ 5,000,000	☐ 3,000,000	☐ 1,000,000	
	납부계좌 : 국민은행 461301-04-661447 (예금주 :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)			

본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동의하고,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24년 월 일

기관명 (인)

(사)한국연구행정협회장 귀하

〈별표3〉

회비 부과 기준표

(단위 : 원)

회비			년 회 비
회원			
개인회원	개인회비	회원기관 소속	20,000
		그 외 개인	50,000
	종신회비		1,000,000
기관회원	기관회비	Diamond	5,000,000
		Gold	3,000,000
		Silver	1,000,000
	찬조금, 기부금		사무국과 상호 정함

* 기관회원은 기관 자체적으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. Gold 등급은 기관이 지정한 대표가 본협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.(다만, 위원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가입한 기관 순으로 참여함, 공석이 없을 경우 차년도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함.)

〈별표4〉

영수증

영 수 증 (납부자 보관용)													
No.													
귀 하													
공 급 자	등록번호	5	8	9	-	8	2	-	0	0	7	1	8
	상 호	한국연구행정협회					성명		최문기				
	소 재 지	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, 본관동 1203-3호(어은동, 한국생명공학연구원)											
	업 태						종목						
작성 년월일		금 액					비 고						
. . .													
공 급 내 역													
적 요									금 액				
위 금액을 영수함. . . .													
한국연구행정협회장											취급자인		
											인		
※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													

〈별표5〉

회비납부자 명단(개인)

일 월	회원번호	성 명	회비해당년도	연회비	비 고

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

회비납부자 명단(기관)

일 월	회원번호	기관명	회비해당년도	연회비	비 고

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

〈별표6〉

개인회원 탈퇴 신청서
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		
전 화		팩스번호	
직장명		직위	
탈퇴사유			
가입일자		탈퇴일자	
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에관한감독규칙에 의거 허가된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보고 및 감독을 받음			
본인은 귀 협회를 탈퇴코자 민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에관한감독규칙에 의한 귀 협회 정관에 따라 귀 협회 탈퇴를 신청합니다.			
2024년 월 일			
신청자 : (인)			
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협회 귀중			

<별표7>

기관회원 탈퇴 신청서

회원(기관)명			대표이사	
주 소				
전 화			팩스번호	
담당자	직위		성명	
탈퇴사유				
가입일자			탈퇴일자	
회비미납기간			미납금액	
1) 미납회비 수납 후 탈퇴접수 2)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에관한감독규칙에 의거 허가된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보고 및 감독을 받음				
당사는 귀 협회를 탈퇴코자 민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에관한감독규칙에 의한 귀 협회 정관에 따라 귀 협회 탈퇴를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 기관명 : 대표이사 (인)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협회 귀중				